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6가단5309933 판결 [보증금 청구]

전 문

원 고 1. A

피 고 2. B

변론 종결 2018. 5. 24

판결 선고 2018. 6. 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600,000원, 원고 B에게 26,638,9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6.10. 21.부터 2017. 3. 10.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 A은 'D'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업을 하고 있고, 원고 B은 모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부회장(이사)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소외 회사에 2016. 8. 8. 12, 754, 500원, 2016. 8. 13. 5, 055, 000원, 2016. 8. 17. 11,016,000원 등 합계 31,600,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하였고, 원고 B은 소외 회사에 2016. 8. 18. 42,399,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3. 소외 회사의 이사인 H와 함께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가구대금 잔액을 2016. 10. 13.까지 지급하기로 각서한다.

'라는 취지의 각 지불각서에보증인으로 서명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 대표이사 G는 2016. 10.21. 원고 A에게 '소외 회사의 미지급 가구대금 2,660만 원을 2016. 10. 28. 16:00까지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라는 취지의 채무이행각서를, 원고 B에게 '소외 회사의 미지급 가구대금 26,638,900원을 2016. 10. 28.

16:00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라는 취지의 채무이행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갑 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위 각 지불각서를 통해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대한 가구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가구대금의 잔액으로 원고 A에게 2,660만 원, 원고 B에게 26,638,9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위 각 지불각서는 원고들 등이 소외 회사를 찾아와 가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에게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채무부담 의사 없이 작성한 것이고,원고들 또한 피고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이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 각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부담 의사는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2) 또한 피고는, 위 각 지불각서는 피고와 H가 함께 보증인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분별의 이익에 따라 채무액의 1/2의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가구대금 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임이 분명한 이상, 그 보증인인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상법 제57조 제2항),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660만 원, 원고 B에게 26,638,9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지불각서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0. 21.부터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2017. 3. 1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김인택